

[직무발명분쟁] 창업주, 기업 오너, 대표이사, 등기이사 등의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실무적

포인트 - 현직 대표이사의 회사법인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: 청주지방법원

2015. 11. 25. 선고 2015가합20824 판결



앞서 설명한 것처럼 **대표이사, 등기이사, 감사, 비등기이사, 임원**도 직무발명을 할 수 있고, 종업원의 지위에서 사용자 법인에 대해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구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정의규정에서 법인의 임원을 직무발명자인 종업원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.

따라서 전문경영인 CEO 뿐만 아니라 주주인 임원도 회사법인에 대해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1인 소유 사업체 법인의 경우에도 그 소유주 대표이사는 법인과 구별되므로 종업원 지위에서 직무발명을 할 수 있고, 그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직무발명보상금을 법인에게는 세액공제, 발명자에게는

일정범위내에서 **비과세소득**으로 보는 세법상 특혜가 있습니다. 따라서 사업체 법인과 오너 모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위와 같은 구별의 실익이 있습니다.

절세 목적으로 회사에서 대주주 대표이사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. 그러나 위 판결 사안과 같이 현직 대표이사가 회사법인을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. 판결에 설명된 배경을 읽어보면,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직 중이나 회사의 대주주 또는 회사법인과는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짐작됩니다.

변리사23년/변호사15년, 특허심판소송, 민형사, 손해배상, One-Stop Service

T. 02-591-0657 E. kkh@kasanlaw.com H. www.kasanlaw.com